

제336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2022. 11. 28(월)

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137
제출일자	2022.11.17.
회부일자	2022.11.22.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이유

가. 대구경북연구원 제6차 이사회('22.10.13)의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의결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경북연구원의 발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나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

3. 주요내용

가. 법인격 : 재단법인(안 제2조)

나. 사업내용(안 제3조)

-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의 조사 및 연구
- 지방행정, 지역경제 진흥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·배포
- 지방행정제도 개선,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정책 과제에 대

한 조사 및 연구, 도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

-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·협력 및 해외자료 비교·연구
- 행정기관, 공공기관,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
- 도와 대구광역시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
-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다. 기금(안 제4조)

- 연구원의 운영 및 소요자금 충당을 위해 연구원 내 별도 기금설치
- 기금은 도,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, 기타 수익금

라. 운영재원 등(안 제5조)

마. 이사의 추천(안 제6조)

바. 연구조사 위탁 및 자료제공(안 제7조)

사.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(안 제8조)

아.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(안 제9조)

자. 검사 및 보고(안 제10조)

-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검사토록 규정

차. 공무원 파견(안 제11조)

- 연구원 목적달성 위해 필요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

카. 권리·의무의 승계, 기금 등 경과조치(부칙 제2조~3조)

4. 관계법령

- 가. 「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나. 「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5. 입법예고

- 가. 예고기간 : 2022.10.17. ~ 11.7(21일간)
- 나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예산관련 : 86억원 소요
- 나. 규제심사 :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다.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라.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7. 검토의견

조례안 전부개정의 필요성

- 본 개정안은 대구경북연구원 제6차 이사회의 연구원 분리의 결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경북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도민 복리증진과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함
- 안 제2조(설립)는 연구를 재단법인으로 함을 규정함
- 안 제3조(사업)는 현행 조례에서는 없던 연구원의 사업내용을 9가지로 구체화하고 있음
- 안 제4조(기금)는 현행 조례에는 기금을 도와 시·군의 출연금만으로 규정했던 것을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음
- 안 제5조(운영재원)는 연구원의 운영경비 충당방법을 기금 운용수입 및 연구원의 수익금으로 구체화하고 그 외 출연금과 보조금의 지원근거도 마련함
- 안 제6조(이사의 추천)는 기존 조례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던 추천 기준을 조례로 직접 규정함
- 안 제7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)는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·조사의 경우 연구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음과 자료요청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
- 안 제8조(경영평가 등)는 경영평가의 실시와 그에 따른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평가의 내용을 구체화함. 다만 기존조례에서 경영평가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연구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

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< (기존)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8조 >

제8조(경영평가 등) ①도지사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하여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.

1. 경영평가 전문기관
2. 회계법인
3. 기타 도지사가 연구원의 평가와 관련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- 안 제9조(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)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시기를 규정함
- 안 제10조(보고 및 검사 등)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관련 공무원의 업무 검사 근거를 규정함
- 안 제11조(공무원의 파견)는 필요시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와 파견공무원의 불이익 대우 금지를 규정함
- 안 제12조(운영규정)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함을 규정함
- 부칙 안 제1조(시행일), 안 제2조(권리·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), 안 제3조(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는 종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되는 경북연구원의 재산·권리·의무의 포괄적 승계 방법 등을 규정함

□ 종합검토의견

- 경북연구원의 설립은 기존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경북도

· 대구광역시의 공동관리에 따른 책임성 기대 곤란 및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현안 신속대응 한계로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, 또한 도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로부터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과정을 거쳐 대구경북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안임

-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경북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
- 전부개정안에서는 이사 추천의 경우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정관으로 정하던 추천 관련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안 제6조에서 조례로 직접 규정하였으며, 현 조례 제5조에서 연구·조사의 위탁 제외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함으로써 도 및 시·군의 위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한 것으로 판단됨
- 다만 안 제8조(경영평가 등)는 현행 조례에서 경영평가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것을 삭제하고 대신 경영평가의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 바, 향후 연구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그 동안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 및 경북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분리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설립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

도 있는 것이 현실임

- 이와 관련, 향후 경북연구원의 설립 추진과정에서 청사확보 방안, 연구원들의 이주 고충 등이 예상되며, 아울러 대구광역시와 분리되는 만큼 출연금 축소에 따른 자부담 확보 방안, 해양·농정 분야 등 경북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과제 집중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, 시·군간 균형있는 업무 지원 등 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역할 정립이 요구되는 바,
- 향후 새로 출범하는 경북연구원이 조속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

참고

2023년도 세입세출(안)

【세입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항 목	'23년 예산액	'22년 예산액 (당초)	비 증 교 감	비 고
계	11,233,639	13,299,864	-2,066,225	
출 연 금	4,300,000	8,600,000	-4,300,000	· 대구시 출연금 43억 미포함
전 입 금	4,000,000	0	4,000,000	· 청사건립기금
사 업 수 입	2,000,000	2,250,000	-250,000	· 수탁용역사업 수입
이 월 금	600,000	1,300,000	-700,000	· 순세계잉여금
이 자 수 입	287,639	105,580	182,059	· 금리 인상분
환 급 금	46,000	44,284	1,716	· 법인세 환급금
기 타 수 입	0	1,000,000	-1,000,000	· 임차보증금 삭제

【세출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항 목	'23년 예산액	'22년 예산액 (당초)	비 증 교 감	비 고
계	11,233,639	13,299,864	-2,066,225	
인 건 비	7,219,330	7,694,295	-474,965	· 정규직 80명 규모 운영
연구사업비	995,790	1,265,790	-270,000	· 기본과제, 정책과제 등:7.5억원 · 연구간행물 유관기관 네트워킹:1.4억원 · 유관기관 교류 네트워킹:1억원
경 상 경 비	2,193,160	3,461,259	-1,268,099	· 이전경비 감액
포 상 금	160,000	180,000	-20,000	· 사업수입 연동
성 과 금	610,359	640,520	-30,161	· 경영평가결과 연동
예 비 비	55,000	58,000	-3,000	· 세출예산의 0.5% 내외